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9호)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 지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 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 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 법 제21조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절 의 내 용 ○ 조례내용 중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위해 1일 3회 이상 청소와 주기적 시설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이 법률로 제정되정비, 연1회 이상 도색등 유지 관리하도 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것인가요? ○ 일반 건물의 개방화장실도 관리를 시에서 해준다는 것인지? ○ 개방화장실은 편의용품만 지원하는 이 현재 시 설치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되는지?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2호
의결	2005.5.19
년월일	(제119회)

제출년월일: 2005. 5 . 4. 제 출 자: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9호)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 마.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 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법 제21조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 □ 첨부 :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 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 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 관리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 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 2. 세정제
 - 3. 방향제

-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 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혐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 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 기적으로 소독할 것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기 한 사 왕	는/J조·영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 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	6 =	<u>ठ</u>	<u>ح</u>	トな	_	실 -	<u>반</u>	리	ナ	<u></u>	•			
전 경 사 진																
소 ^ス	내 지								ğ	· 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24 =1				관리책		소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설치 년도					임공 -	무	직급			
관리수체	관리주체							9			성 명					
관리	의 인			_		(전화	번.	ই:) 월평균 이용			B인원			
	卫	부지	화장실 면적(m]	대변기			기수			변기 수 -		대변기			용료
규		(m²)	면식(M	[]	남	급 여		장애인] ,	성인용	. 유	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 무료
							_		\perp							
	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고	냉' 시 _^	방서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l E	키누	수 건 (에어 타올)] [탈취제 -	청소도		_ 기 타
편의시		시설	시설	^ <u>^</u>	<u> </u>		+	판매기)			타올) (방향제)	내부	외부	- ' '
						s		Т			I _					
지사하	al 1]]0]	년월일	관리/	나항	(2	금 액 천원)	1	년월일	관i	리사항	금 (천	액 원)	년월일	관리시	항	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처리기간							
											109					
신	신 상 호(명칭)															
청	성명	형(대표	포자)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시	소	재	지		관리주체											
설	관	리	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현 황	규		모	부 지	부 지 : m², 화장실 면적 : m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기 유형		
시	시 설 내 역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설																
내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E	타올		환풍기		장지	비누		방향제			
역			, , ,	(페이퍼	타올)			유	무	유	무	유	무			
1	회 /	사용토	コ エ			원										
	「부:	천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	례」 제1	.6조×	네1항	의 규	'정이	비의	하		
여	유료	화장	실을	신고합니	니다.											
								,			. 3					
					신고인	:		(날인	또는	· 셔드	경)				
	부	-천시	장 구	기하												
구비서류 수수료										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u>3</u> .	2. 와정실 단니 및 군정계획시 없 음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উ	유	료 화	장 실	실 신 고	필 증	<u> </u>						
대	상 호(명칭)											
표 자	성	명											
	주	소											
ž	란 리 역	인		(전화번호 :)									
			대변기 수			소변기	기 수	대변기 유형					
시	시설내역	내 역	남자용 여자용 장이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설 내													
역	편 의 시 설	세민	년시설	에 (페	어타올 이퍼타올	<u>)</u>	환 풍 기						
	71	1 6		대			대	대					
1	회 사용	コ 正	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Ļ	<u> </u>	월	일							
			부	천 .	시 장	- ତ୍ରୀ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 1.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 10. 석유사업법 <u>제2조</u>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 13.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 이상, 세로 115센티미터 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

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개정 1999.04.30>
- 5.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6.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 시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에 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 (위탁처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 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2.18>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 2. 비누(또는 액체비누)
-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개정 1999.04.30>
-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개정 1999.04.30>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u>별지 제1호서식</u>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때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 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개선 권고 <개정 1999.04.30>

제13조 (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선권고)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 및 청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4.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접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